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77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김 윤 · 이주희
채현일 · 박지원 · 정진욱
이상식 · 윤종오 · 최민희
권향엽 · 복기왕 · 박해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
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,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
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(90일)에 비해 짧아 규제
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.

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, 추진실적, 성과
등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회·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, 이
는 사실상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
구하고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
용될 소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
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

편,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·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86조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, “60일후에”를 “90일후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민원상담 기타”를 “민원상담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회·설명회, 기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